

정본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869 소재 부동산
평가서번호	가온 2602-07-3118
의뢰인	부산동부신용협동조합장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가온감정평가법인

부 산 경 남 지 사

TEL:(051) 507-0667 FAX:(051) 507-0688



제 출 문

□ 본인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신의를 좇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평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거나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았습니다.

□ 본인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의뢰인과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인은 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보수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금품·향응 및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주)가온감정평가법인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최수원



|주가온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지사장 이 상 구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삼억구천삼백만원정 (₩393,000,000.-)		
의뢰인	부산동부신용협동조합장	감정평가 목적	공매
채무자	-	제출처 (채권기관)	부산동부신용협동조합
소유자 (대상업체명)	위탁자:신유건설(주), 수탁자:우리자산신탁(주)((구)국제자산신탁(주))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기준시점	조사기간
		2026.02.26	2026.02.26
			작성일
			2026.02.27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구분건물	3개호	구분건물	3개호	-	393,000,000
			이하	여백		
합계						₩393,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도시철도1호선 "다대포항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부산동부신용협동조합의 공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건임.

2. 대상물건개요

2.1 총괄개요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소재지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869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29번길 23)		
건물명	다대에코하임		
주용도	업무시설, 공동주택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지목	대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사용승인일	2016.12.01
건물규모	동수	층수	호수/세대
	1	-1/12	19호/8세대
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289	1,973.24	
비고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2 대상개요

구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	대지권면적 (㎡)	전용률 (%)	용도	
기호	층/ 호수						공부	현황
가	4/ 401	45.57	12.8751	58.4451	9.0192	78.0%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나	8/ 801	59.07	16.6891	75.7591	11.6792	78.0%	오피스텔	오피스텔
다	11/ 1101	59.07	16.6891	75.7591	11.6792	78.0%		
합계		163.71	46.2533	209.9633	32.3776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3.1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사항의 확정)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자인 2026.02.26일로 하였음.

3.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6.02.26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4. 기준가치

4.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4.2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감정평가조건

5.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음.

5.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6. 감정평가방법

6.1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감정평가 제 이론에 의거 감정평가하였음.

6.2 일괄감정평가 원칙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함이 원칙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3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정하는 주된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간 합리성을 검토하여야함.

다만, 원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현실에 있어서 원가의 합리적인 배분이 곤란하여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수익환원법은 본건의 이용상황(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특성을 고려할 때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다른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기타사항

- 임대관계

미상임.

- 물적 동일성 여부 등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 및 현장조사를 통해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음.

- 점유부분의 위치확인 등

본건의 위치확인은 건축물 현황도면 및 현 점유사용부분에 의거 확인하였음.

- 전입세대열람내역

별첨 <전입세대확인서> 참조.

- 그 밖의 사항

① 본건 기호(가) ~ (나)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물에 부합함.

② 본건은 현장 조사 시 이해관계인 폐문 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관련 공부와 외부 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공매 진행시 내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통해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출하였음.

2. 가격 참고자료

2.1 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층/ 호수	전유면적 (㎡)	계약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금액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다대동 849-1외 다대대상웰리움	10/ 1001 (오피스텔)	71.5487	93.6368	2,585,651	185,000,000	2024.07.20 (2017.11.17)
2	다대동 857-2 우성로얄캐슬1	13/ 1302 (도·생)	43.3607	67.48	2,767,483	120,000,000	2025.09.26 (2017.05.10)
3		4/ 401 (도·생)	42.3922	66.8929	3,538,387	150,000,000	2024.05.24 (2017.05.10)
4	다대동 869 다대에코하임	2/ 202 (도·생)	49.6	63.6137	3,024,194	150,000,000	2022.09.24 (2016.12.01)
5		10/ 1003 (오피스텔)	55.09	70.6547	2,450,535	135,000,000	2023.07.04 (2016.12.0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2 인근감정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층/ 호수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원/㎡)	감정평가액 (원)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감정평가 목적
1	다대동 869 다대에코하임	4/ 401 (기호(계))	45.57	2,786,921	127,000,000	2025.06.19 (2016.12.01)	시가참고
2		8/ 801 (기호(나))	59.07	2,183,850	129,000,000	2025.06.19 (2016.12.01)	시가참고
3		11/ 1101 (기호(다))	59.07	2,183,850	129,000,000	2025.06.19 (2016.12.01)	시가참고
4		4/ 402 (도·생)	49.6	3,024,194	150,000,000	2025.05.12 (2016.12.01)	공매
5		10/ 1001 (오피스텔)	59.07	2,336,211	138,000,000	2025.05.29 (2016.12.01)	경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3 시세수준

구분	시세수준(원/㎡)	비고
본건 유사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 2,800,000원/㎡ 내외 수준	전유면적기준
	오피스텔 : 2,200,000원/㎡ 내외 수준	
의견		

본건 인근에 소재하는 유사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의 시세수준은 대체로 상기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층별, 위치별, 전유면적의 크기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남.

2.4 경매통계분석

(출처: 인포케어)

구분	종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낙찰가율(%)	낙찰건수(건)	낙찰가율(%)	낙찰건수(건)
최근 1년간 평균	집합건물/ 다세대	45.81	68	36.16	16
최근 6개월간 평균	집합건물/ 다세대	43.32	53	36.16	16
최근 3개월간 평균	집합건물/ 다세대	53.22	8	0.00	0
최근 1년간 평균	집합건물/ 오피스텔(주거)	46.53	59	44.00	3
최근 6개월간 평균	집합건물/ 오피스텔(주거)	45.50	41	44.00	3
최근 3개월간 평균	집합건물/ 오피스텔(주거)	46.10	19	52.63	1

※ 기준통계기간은 2025.02.01 ~ 2026.01.31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거래사례 선정

본건 건물과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선정하되,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로서 용도, 층별효용 및 위치별효용 등이 유사한 <거래사례#4, 5>를 본건에 적용할 거래사례로 선정 하였음.

기호	소재지	층/호수	전유면적 (㎡)	계약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금액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4	다대동 869 다대에코하임	2/ 202 (도·생)	49.6	63.6137	3,024,194	150,000,000	2022.09.24 (2016.12.01)
5		10/ 1003 (오피스텔)	55.09	70.6547	2,450,535	135,000,000	2023.07.04 (2016.12.01)

4.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1.000).

5. 시점수정

5.1 지가변동률(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업지역)

(출처: 국토교통부)

기간	변동률(%)	비고
2022.09.24 ~ 2026.02.26	1.01081	거래사례#4 거래시점~기준시점
2023.07.04 ~ 2026.02.26	1.00693	거래사례#5 거래시점~기준시점

5.2 매매가격지수(연립다세대, 부산 서부산권)

(출처: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2022.08	2026.01	시점수정치	비고
104.5	98.4	0.94163	98.4 / 104.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3 매매가격지수(오피스텔, 부산광역시)

(출처: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2023.06	2026.01	시점수정치	비고
101.96	94.53	0.92713	94.53 / 101.96

5.4 시점수정치

일반적으로 구분건물의 경우 용도에 따라 각 용도의 특성에 맞는 시점수정치를 적용하나 본건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로서 대상부동산의 특성 및 가격추이가 반영된 연립다세대 및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를 시점수정치로 결정하였음.

기호	시점수정치	비고
(가)	0.94163	거래사례#4
(나), (다)	0.92713	거래사례#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가치형성요인 비교

6.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기호(케) / 거래사례#4>

구분	세부항목	격차율	비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본건 기호(케)는 거래 사례#4와 동일건물에 위치함으로서, 단지 외부요인 대등시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본건 기호(케)는 거래 사례#4와 동일건물에 위치함으로서, 단지 내부요인 대등시됨.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요인	층별 효용	1.00	본건 기호(케)는 거래 사례#4와 비교하여 향별효용에서 열세 하나 층별효용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인 호별요인 대등시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장래의 동향, 기타에서 제반 기타요인 대등시됨.
개별요인 비교치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호(나), (ㄷ) / 거래사례#5>

구분	세부항목	격차율	비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본건 기호(나), (ㄷ)는 거래사례#5와 동일 건물에 위치함으로서, 단지 외부요인 대등 시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본건 기호(나), (ㄷ)는 거래사례#5와 동일 건물에 위치함으로서, 단지 내부요인 대등 시됨.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요인	층별 효용	0.99	본건 기호(나), (ㄷ)는 거래사례#5와 비교 하여 호별효용에서 열세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장래의 동향, 기타 에서 제반 기타요인 대등시됨.
개별요인 비교치		0.99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가액

구분 기호	층/ 호수	거래사례 전유면적당 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적용단가 (원/㎡)	산출가액 (원)
나	8/ 801	2,450,535	1.000	0.92713	0.990	2,249,245	132,862,902
다	11/ 1101	2,450,535	1.000	0.92713	0.990	2,249,245	132,862,902

8.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분 기호	층/ 호수	전유면적 (㎡)	계약면적 (㎡)	전유면적기준 결정단가 (㎡)	산출가액 (원)	결정가액 (원)
나	8/ 801	59.07	75.7591	2,249,245	132,862,902	132,000,000
다	11/ 1101	59.07	75.7591	2,249,245	132,862,902	132,000,000
합계						393,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구분		전유면적 (㎡)	계약면적 (㎡)	전유면적 기준결정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기호	층/ 호수				
가	4/ 401	45.57	58.4451	2,847,672	129,000,000
나	8/ 801	59.07	75.7591	2,249,245	132,000,000
다	11/ 1101	59.07	75.7591	2,249,245	132,000,000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가액은 상기 참고가격 자료(시세수준, 감정평가전례, 통계분석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 29번길 23	869 다대 에코하임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12층					
				1층	83.62				
				2~5층 (각)	121.52				
				6,7층 (각)	152.41				
				8~12층 (각) 지하1층	207.5 61.2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869	대	일반상업지역		304			
	(내)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4층 제401호				45.57	45.57	129,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12.8751㎡ 포함)	
	1.소유권			8.5742					
	대지권			----- 289	9.0192				
				토지·건물 토 지 : 건 울 :			배분내역 51,600,000 77,400,000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8층 제801호				59.07	59.07	132,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16.6891㎡ 포함)		
1.소유권			11.1030						
대지권			----- 289	11.6792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용도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다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11층 제1101호 1.소유권 대지권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39,600,000 92,4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16.6891㎡ 포함)
					59.07	59.07	132,000,000	
					11.1030	11.6792		

				289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39,600,000 92,400,000	
	합 계						₩393,000,000.-	
				이 하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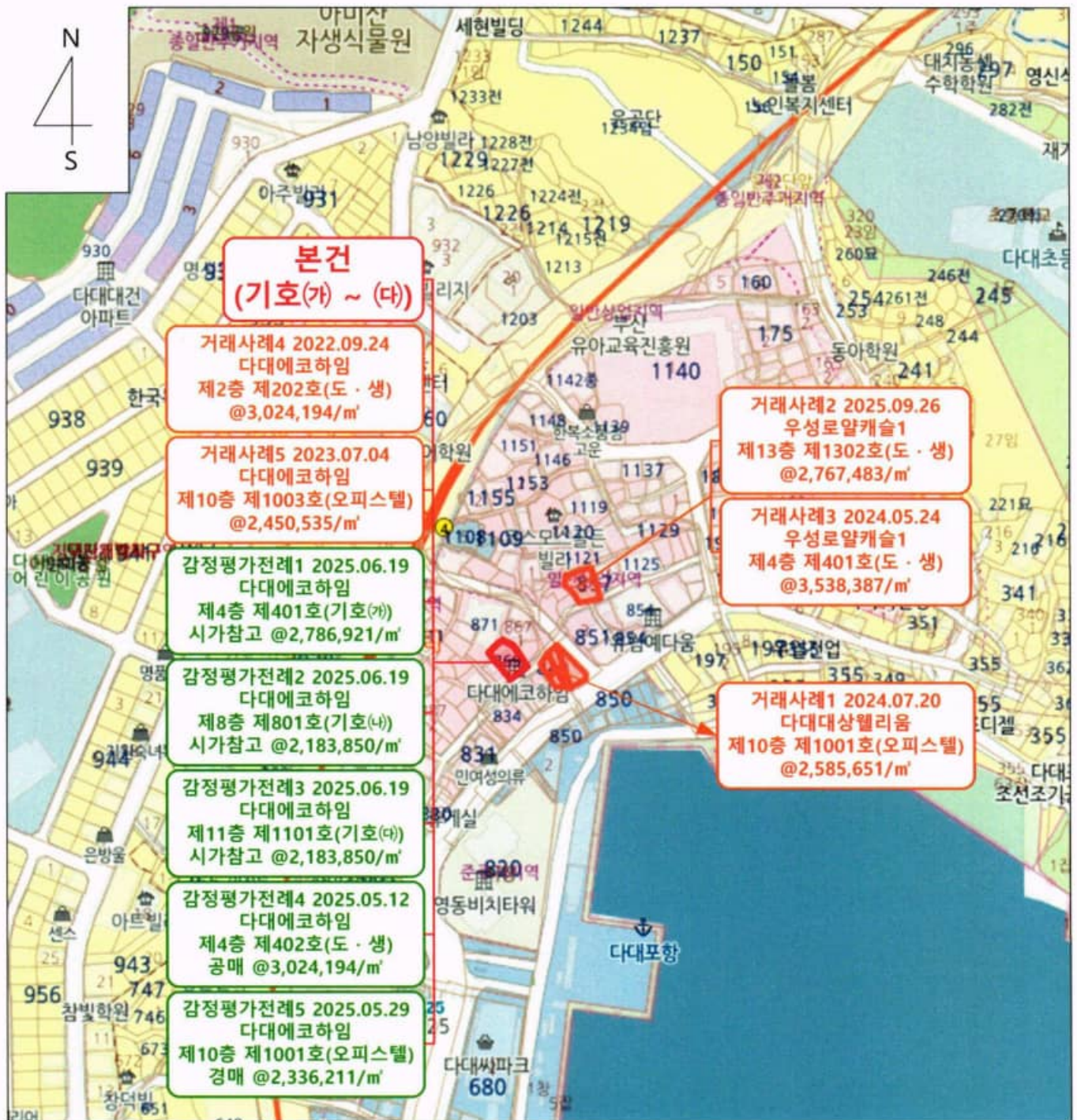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토지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도시철도1호선 "다대포항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도시철도1호선 "다대포항역">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형태,규모, 이용상황 등	사다리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도로 상태	본건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막다른 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관계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110m)<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80m)<건축법>,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건물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건 내 제4층 제401호 외 2개호로서 2016.12.01 사용승인되었으며, 외벽 : 몰탈위페인팅 및 화강석판 및 스톤코트 등 창호 : 하이샷시창 구조 등임.
	이용상황	기호(가)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기호(나), (다) : 주거용 오피스텔
	부대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15인승, 1000kg),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임대상황	미상임.
	공부와의 차이 및 기타	전입세대열람내역(26.02.27) 기호(가) - 세대주 : 이재원, 전입일자 : 2017.11.14 기호(나) - 세대주 : 오혁준, 전입일자 : 2025.03.28 기호(다) - 세대주 : 최비결, 전입일자 : 2018.0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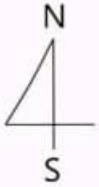
상세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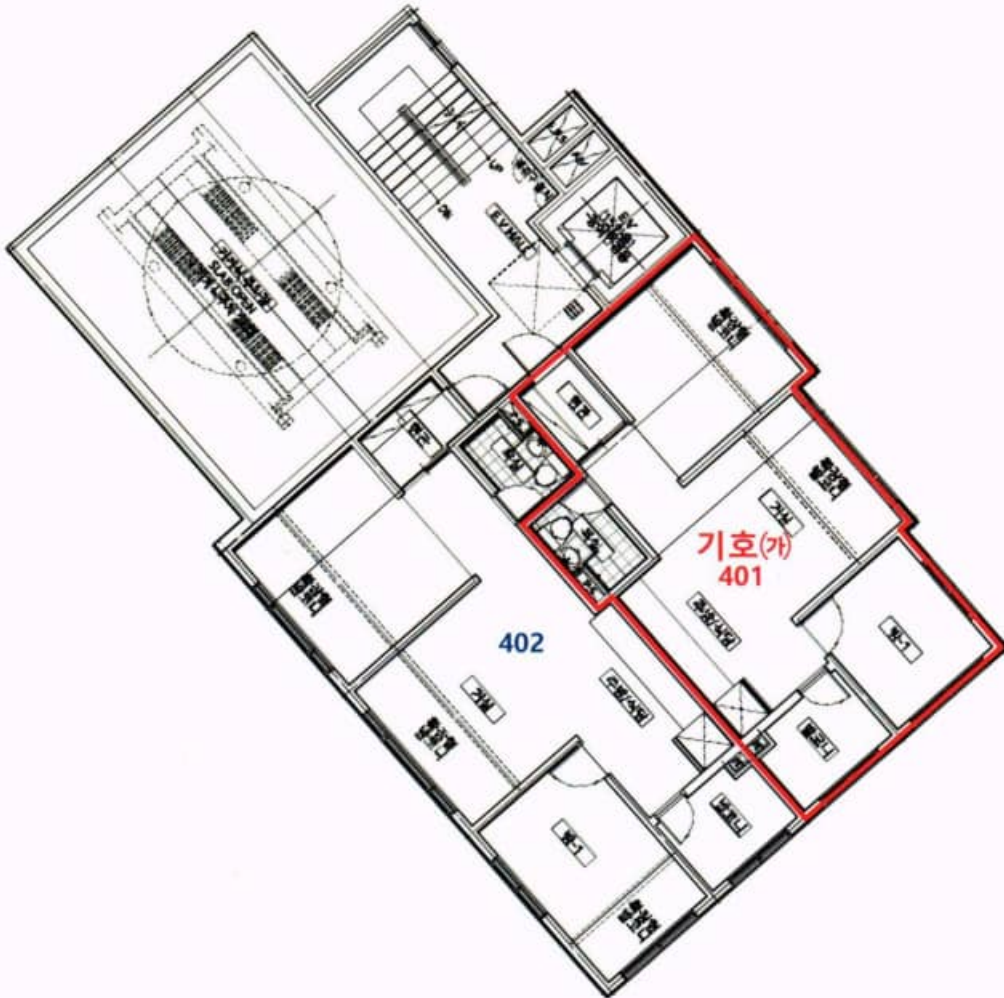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869
<다대에코하임 제4층 제401호 외 2개호>



건물개황도



NON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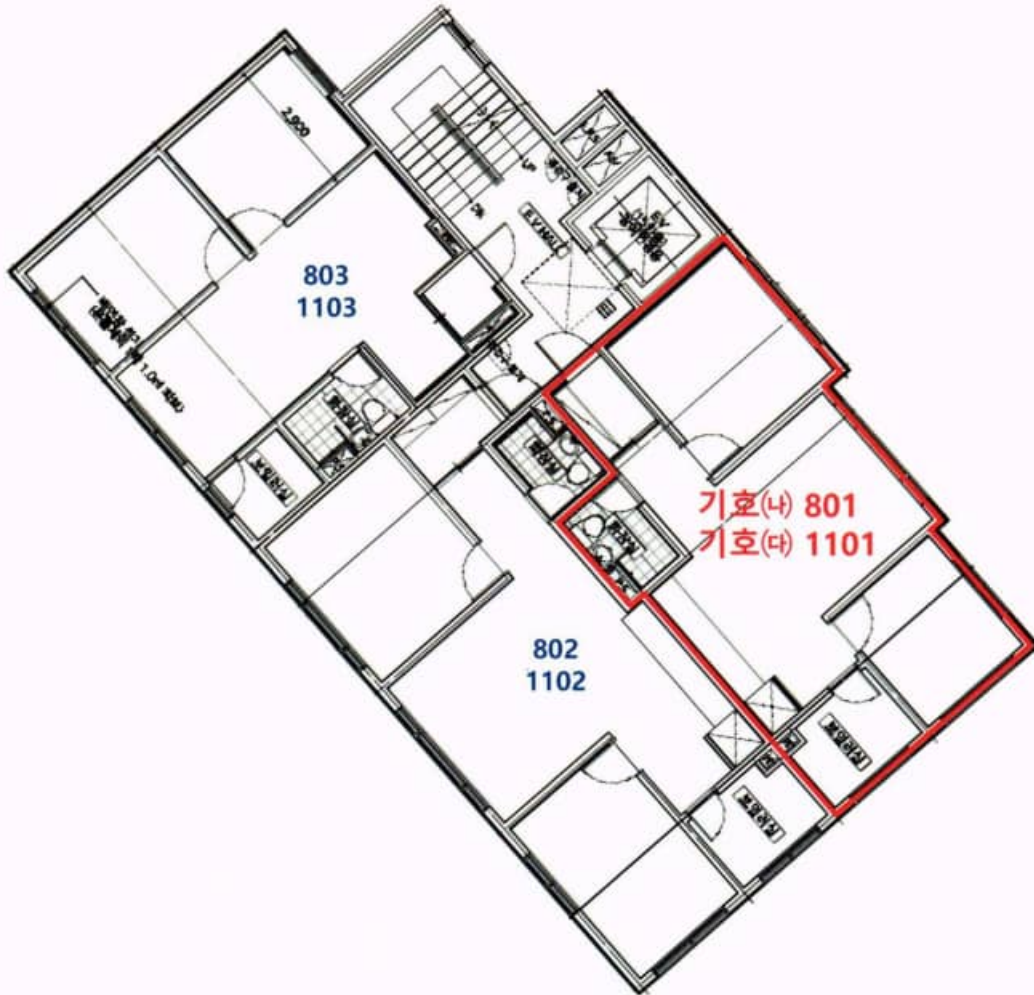


<다대에코하임 제4층 호별배치도>

건물개황도



NONE SCALE



<다대에코하임 제8, 11층 호별배치도>

사 진 용 지



본건전경



본건전경

사 진 용 지



기호(가) 전경



기호(나) 전경

사 진 용 지



기호(다) 전경